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7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홍국표, 황유정 의원(32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교표, 교기, 교가 등은 학교 자율로 관리·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전국의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편취한 음반제작업체가 적발되고, 일부 학교 교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방침이나 기준 없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내 공립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학교 상징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학교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삭제를 위한 요건과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또는 삭제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용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식재산 기본법」, 「상표법」, 「저작권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

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및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연번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비고
1	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안 제6조)	○	기술적 추계 한계
2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안 제8조)	○	기술적 추계 한계

- 안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를 위한 특허청 출원관련 수수료는 발생하나 등록학교 및 등록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적재산권 등록 유사사례 및 등록비용 : 서울시교육청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권 [붙임 참고]

- 안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일부 세입이 발생하나 현 시점에서 등록 상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적재산권 사용료 부과 유사사례

· 대상 : 천경자 미술저작물에 대한 부과 사용료(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사용료 부과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사용료 장수규정 제6조(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서울시교육청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실적

〈서울시교육청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실적〉

구분	지식재산권 종류	권리 구분		소계	합계	비고
		출원	등록			
2021	특허	57	2	59	72	출원·등록 수수료 무료 ※ 특허권 관료 감면제 때라 번9세 미만 무료
	디자인	13	-	13		
2022	특허	37	3	40	80	
	디자인	40	-	40		
2023	특허	72	1	73	152	
	디자인	79	-	79		
합계		298	6	304	304	

※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제공 자료

(붙임2) 특허청 출원관련 수수료

출원관련 수수료

출원료

2023.08.01 기준 (★표는연제 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없음	없음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 (상표출원) 출원료 납부시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 제출사를 기준으로 함
[적용례] (원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 그외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분할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150,000원
- ※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특허 : 매건 56,000원, 실용신안 : 매건 25,000원, 디자인 : 매건 99,000원(심사), 50,000원(일부심사)